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30.(화) 15:30 < 5.31.(수) 조간 > 배포 2023. 5. 30.(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규제 개선으로 기술패권에 적극 대응한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 의약품 해외 인허가, 해외 공동연구 등의 기술수출 시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김화현 (044-203-48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1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 개정 개요

○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기술유출 통로를 차단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

○ 기업·연구기관 등 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기술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 제고 기대

2. 주요 개정 내용

[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적용 대상 확대

○ (외국인) 이중국적자,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 추가

○ (기술수출) 국내 이전(내국인→외국인),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

○ (해외 M&A)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국내기업 간접지배도 통제

[2]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보호제도 정비

○ (판정명령, 등록제)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판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의무 부여

○ (조건부과 및 이행점검) 수출 신고수리 시 조건 부과가 가능케하고, 부과 조건에 대한 사후 이행점검 근거 마련

○ (제제 강화) 해외유출 처벌요건 확대(목적범→고의범),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도 처벌, 원상회복 미이행(불법 M&A)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3. 향후계획

○ 규제심사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내 개정(안) 국회제출

* 입법예고(~7월)→규제심사(~10월)→대통령재가(~11월)→국회제출(~12월)

2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

1. 개정 개요

ㅇ 기술보호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제도 개선

ㅇ 수출 심사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2 주요 내용

① 완제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제 도입

ㅇ 의약품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 대해 연간 사전 포괄승인 후, 실제 수출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로 승인 (심사기간 단축)

②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시 연간 포괄심사제 도입

ㅇ 국내 기관과 100%지분을 보유한 해외기관(자회사) 간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연간 사전 포괄심사 및 사후보고 (심사기간 단축)

③ 해외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시 신속대응을 위한 기술자료 수출건은 대면 대신 서면검토를 우선 적용하여 심사기간 단축

④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을 이전되는 경우는 심의면제

3. (향후계획) 금년 7월까지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을 개정

3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의결 (총6건)

1 (1호~3호) 해외 보건당국 등에 의약품 품목허가용 기술 자료 제공(생명공학 분야) → 수출승인

2 (4호)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자동차 분야) → 수출승인

3 (5호~6호) 국내 조선-해운사 간 해외 중재절차 대응을 위한 기술 자료 반출(조선 분야) → 조건부* 수출승인

* △ 보호조치 이행 후 결과보고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결과보고 △ 실제 제공된 기술자료 현황 보고 △ 기술자료의 사용 종료 후 회수 조치 등

4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산업기술 보호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중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 (근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 (구성) 산업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

* (관계부처)기재·교육·과기·외교·법무·국방·농림·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차관, 특허청장, 국정원차장

▹ (기능) ①종합계획 수립·시행, ②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③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④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승인, ⑤산업기술보호위 및 전문위 운영 등의 심의·의결 등

□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계획(안)

○ (일시 / 장소) 5. 30(화) 14:00~16:00 / 서울(무역보험공사)

○ (참석자)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기술보호위원, 안건 관계자 등 약 40명

○ (방식) 심의안건 상정→심의→의결 및 보고안건 상정→자유토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 기술보호 정책 환경 】

안건 심의에 앞서
산업기술보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 확보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로 대표되는 주력산업에서부터
AI, 양자, 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물론,
외국인의 직접투자,
심지어 자국민의 첨단기술 분야 해외투자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확보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산업기술보호 정책 추진방향 】

정부는 지난 주 금요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압도적 제조역량을 확보하고
기술인재 강국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산업기술보호가 필수 요소로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취약 분야는 집중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보호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합병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기술수출과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여
더욱 철저한 기술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오늘 논의 안건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약품 분야에서 포괄승인제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기술보호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관련된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나 대학의 경우
대기업 대비 기술보호 역량이
2/3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나 대학이
기술보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대학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함께 부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무리】

오늘날 국제 질서는
경제, 안보, 기술이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술보호가 되어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안건 뿐만 아니라
기술보호 정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